

이루다투자일임 「투자일임계약서」 개정안 신. 구조문 대비표

약관 변경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p>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①~⑨ (내용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조</p> <p>1~9 (내용 현행과 같음)</p> <p>10. "기본수수료"란 투자일임재산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p> <p>11. "성과수수료"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성과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p>	<p>기존에 항으로 표시된 것을 호로 변경</p> <p>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정의 추가</p>
<신설>	<p>제3조(계약의 내용)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내용은 <별지>에 따른다.</p>	투자일임계약서 (예시안)의 내용 추가
<p>제3조(투자일임의 범위) ①~⑥ (내용 생략)</p>	<p>제5조 1~6 (내용 현행과 같음)</p>	순번이동 기존에 항으로 표시된 것을 호로 변경
제4조(투자대상)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p>제5조(투자일임의 내용)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게 일임 및 요구하고 회사는 이를 수락하여 투자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투자목적과 성향에 부합하는 전략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각 자산을 구성할 포트폴리오 및 금융투자상품의 선택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 가치 판단에 대한 사항 4. 금융투자상품 등의 종류, 종목, 매매시기, 매매가격 등의 결정 5. 제4호를 위하여 필요한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결정 (금융투자상품의 모집 등에 대한 청약포함)과 이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 	<p>제6조(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보고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전략에 대한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순번이동 투자일임계약서 (예시안)의 내용으로 변경

업무		
<p>제6조 (이해상충 방지기준 및 절차)</p> <p>① 회사는 고객에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한다.</p> <p>② 회사의 투자일임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회사, 또는 고객과 다른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한다.</p> <p>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삭제></p>	<p>투자일임계약서 (예시안)에 따라 삭제</p>
<p>제7조(투자일임수수료)</p> <p>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p> <p>① (생략)</p> <p>② 성과보수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라 운용성과와 연동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성과보수 산정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 세부계약 조건의 수수료 지급시기에 따른다.</p> <p>③ (생략)</p>	<p>제7조(투자일임수수료)</p> <p>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성과<u>수수료</u>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라 운용성과와 연동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성과보수 산정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수수료 지급시기에 따른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보수를 수수료로 변경</p>
<p>제8조 (회사의 신의성실 의무) (생략)</p>	<p>제8조 (현행과 같음)</p>	
<p>제9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p> <p>①,② (생략)</p> <p>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p> <p>④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p>	<p>제9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 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p> <p><삭제></p>	<p>순번이동</p> <p>투자일임계약서 (예시안)에 따름</p> <p>③항의 내용에 포함</p>

<p>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p> <p><신설></p>	<p>④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 내 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 내 합의서의 내용 작성 시 고객과 회사와의 충분한 사전 동의 하에 작성하도록 한다.</p>	<p>투자일임계약서(예시안)에 따라 추가</p>
<p>제10조(투자결과 등의 통보)</p> <p>①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분기마다1회 이상 고객에게 온라인, 전자우편 또는 우편, 직접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p> <p>1~4. (생략)</p> <p>5. 투자일임수수료(성과보수 포함) 부과기준, 지급시기 및 금액</p> <p>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로 지급 내역</p> <p>7~8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임보고서를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투자일임보고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p>	<p>제10조(운용계획서 및 투자일임보고서 교부)</p> <p>① 계약기간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 1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야 하며,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p> <p>② 제1항의 투자일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투자일임수수료를(삭제)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p> <p>6. 성과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준 지표의 성과와 성과수수료 지급내역 등</p> <p>7~8 (현행과 같음)</p> <p><삭제></p>	<p>투자일임계약서(예시안)에 따름</p> <p>6호에 성과수수료 내용이 있으므로 삭제.</p> <p>①항의 내용 중복</p>
<p>제11조(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운용 관련사항)</p> <p>①~④ (생략)</p> <p>⑤ <신설></p>	<p>제12조</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고객의 제3항의 교체 동의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사표시를</p>	<p>순번이동</p> <p>교체 동의 기한 지정</p>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생략)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과 관리사항, 신상내용 등에 대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생략)	제1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③ (현행과 같음)	순번이동 투자일임계약서 (예시안)을 따라 추가
제13조(통지의무) ①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모바일앱의 개인정보 수정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모바일앱 내 메시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방법을 달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방법에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객센터의 전화번호 등은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14조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의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방법을 달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방법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순번이동 개인정보 변경 방법의 추가 투자일임계약서 (예시안)을 따라 수정
제14조(통지의무) ①~③ (생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순번이동
제15조(회사의 금지사항) ①~⑫ (생략)	제16조 1~12 (내용 현행과 동일)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순번이동 기존 항목으로 표시된 부분을 호로 변경 투자일임계약서 (예시안)의 내용 추가

<p>⑬~⑰ (생략)</p> <p>⑱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행위</p>	<p>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p> <p>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주식매수권의 행사,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유상증자의 청약, 전환권의 행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p> <p>14~18 (순번이동, 내용 현행과 같음)</p> <p><삭제></p>	<p>투자일임계약서 (예시안)의 내용 따름</p>
<p>제16조(회사가 위임 받을수 없는 행위)</p> <p>① 고객의 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증권회사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3. 투자일임재산으로 소유하는 유가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4. 그 밖의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행위 <p>② 회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위임 받을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위임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2.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행사 8.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p>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삭제></p>	<p>제16조(회사의 금지사항) 내용 중복</p>
<p>제17조(면책)</p> <p>1~3 (생략)</p>	<p>제26조</p> <p>(현행과 같음)</p>	<p>순번이동</p>
<p>제18조(업무의 위탁)</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p>	<p>제22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및 내부감사업무 등의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p>	<p>순번이동</p> <p>자본시장법 현행 규정 반영</p>

<p>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p>	<p>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p>	
<p>제19조(계약기간) ①~⑤ (생략)</p>	<p>제17조 ①~⑤ (현행과 같음)</p>	<p>순번이동</p>
<p>제20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② (생략) ③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④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회사는 계약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p>	<p>제18조 ①, ② (현행과 같음) ③~⑦ <삭제></p>	<p>순번이동 제23조(약관의 변경 등)으로 조문 분리</p>

<p>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1조(계약개시, 만료, 해지, 투자중지 시의 재산형태)</p> <p>①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와 투자중지 또는 만료, 해지(철회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재산 형태는 현금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9조(계약, 만료, 해지, 투자중지 시의 재산 형태)</p> <p>①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와 계약의 만료, 해지 또는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른 투자중지 시점에 고객에게 반환하는 재산형태는 원화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순번 변경</p> <p>해외증권에 투자하는 일임계약의 경우 통화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음</p>
<p>제22조(투자일임재산의 평가 및 정산)</p> <p>1, 2 (생략)</p>	<p>제20조</p> <p>1, 2 (현행과 같음)</p>	
<p>제23조(투자실적의 평가)</p> <p>① 투자수익률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투자일임재산의 계산은 제22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p> <p>② (생략)</p>	<p>제21조(투자실적의 평가)</p> <p>① ----- ----- ----- 제20조의 ----- -----</p> <p>② (현행과 동일)</p>	<p>순번 변경</p>
<p>제24조(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 및 변경)</p> <p>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운용인력을 선임한다.</p> <p>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운용인력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운용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p>	<p>제11조(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p> <p>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임한다.</p> <p>② <삭제></p> <p>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일임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고객이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담당자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p>	<p>순번 변경</p> <p>투자일임계약서(예시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p>

<p>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고객의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투자운용인력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일임담당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투자일임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제25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② (생략)</p>	<p>제29조 (현행과 같음)</p>	<p>순번 변경</p>
<p>제26조(분쟁조정) (생략)</p>	<p>제27조 (현행과 같음)</p>	<p>순번 변경</p>
<p>제27조(관할법원) (생략)</p>	<p>제28조 (현행과 같음)</p>	<p>순번 변경</p>
<p>제20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p> <p>① 고객은 전화, 서면 또는 모바일앱 등 회사가 마련한 전자적 장치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p> <p>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p>	<p>제23조(약관의 변경 등)</p> <p><삭제></p>	<p>제18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로 조문 분리</p>

3. 일임상품명 : 이루다 올웨더	3. 일임상품명 : 에버그린	상품명 변경
--------------------	-----------------	--------